의안번호	2201357
의 뢰 인	이연희 의원
회 답 일	2024. 7. 15.
추계번호	24B16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5억 3,300만원(연평균 17억 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안 제5조의9, 안 제5조의14, 안 제5조의15)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156	160	163	167	170	816	163
위탁사업비(용역)	1,016	1,038	1,060	1,083	1,105	5,303	1,06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91	93	95	97	99	477	9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등	1,306	0	206	210	215	1,937	387
합계	2,570	1,292	1,525	1,557	1,590	8,533	1,707

주: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인 2021년 운영비 집행 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시스템 신규 구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둠.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2022년 말) 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3	안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 후 일몰[1]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설치·운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본 추계는 2022년 일몰 전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운영했던 사례 및 안전운임신고센터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 등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2]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1)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3.)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5.1	3.6	2.6	2.2	2.2	2.1	2.1	2.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안 제5조의9, 안 제5조의14, 안 제5조의15 신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던 2020~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집행 예산은 매년 11억원 수준임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2년도에 일몰되어 2023년도 적용 안전운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위탁사업비(용역) 및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비 예산이 감소하는 등 2022년은 집행액이 적었음

[표 2] 과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위원회 운영	160	137	90
위탁사업비(용역)	900	890	810
신고센터 운영	80	80	62
합계	1,140	1,107	962

자료: 국토교통부

○ 2021년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 안전운임위원회와 철강재, 카고 등 2개 품목 안전운송원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총 80명(전원 민간위원)을 두었으며, 회의는 총 55회 개최하였음

[표 3]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단위: 명)

위원회 구성									
안전운임(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송원가(철강재·카고 품목)				
본좆	전문좆		운영좆		본좆	전문좆		운영좆	
	컨테이너	시멘트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카고	철강재	카고
13	11	8	4	4	13	8	11	4	4

자료: 국토교통부

[표 4]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 개최(회)	회의실(장소)	임차비용(백만원)
55	서울역 회의실, 삼경교육센터(서울) 등	7

자료: 국토교통부

○ 위탁사업비(용역)는 ①운송비용 조사, ②공적자료 분석, ③원가·운임 산정 및 검증 등에 집행되었고, 신고센터 운영비는 ④시스템 운영, ⑤위탁운영, ⑥제도 홍보 등에 집행되었음

- ①(운송비용 조사)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 및 안전운송원가(일반형, 철강재) 품목 대상 차주·운수사 대면 면접조사* 및 표준원가 조사** 수행

  * 화물차주 및 운수사의 직접적인 화물운송 활동(운송횟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 및 화물운송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활동(차량구입, 정비, 주차, 세무신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

  **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단가 조사로 객관적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차주·운수사가 아닌 정비소, 세차장, 세무사업소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금액 조사

- ②(공적자료 분석)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확보 가능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차량구입금액, 운행거리, 연비 등 주요 운송원가 산출 구성요소 분석

  * 예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가보조금 시스템,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

- ③(원가·운임 산정 및 검증) 차주·운수사 면접조사, 표준원가 조사, 공적자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을 산정하고 회계적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수행

- ④(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운임신고센터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안전운임 관련 데이터 수집, 가공, 통계분석 등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운영 및 관리

- ⑤(위탁운영) 안전운임 위반 신고접수, 관한관청 통보, 신고 처리 상황 관리, 콜센터 통한 시스템 안내 등 위탁운영

- ⑥(제도 홍보) 안전운임제도 취지 및 이해 향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운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를 신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과거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개설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의 운영 인프라(서버, 상용S/W 등)를 같이 사용하여 운영하였고, 일시적 민원 집중 발생 시 시스템 인프라(서버 트래픽) 과부하로 두 시스템 모두 서버다운 등으로 대국민 업무 불편을 초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에 공공 클라우드 기반(IaaS방식)의 안전운임신고센터 전용 시스템 인프라 신규 구축 및 현재 추진중인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과 '26년 이후 상호 데이터를 연동하여 업무에 효율성 향상하기 위해 시스템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 5]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등 단가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시스템 구축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인프라	상용SW(암복호화 툴, 공인인증 툴 등)	90
		HW(WEB 서버, WAS 서버, DB 서버 등)	93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시스템 개발	SW개발비 등	52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기능 구축	SW개발비 등	363
	지입제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SW개발비 등	528
	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시스템 감리	감리비 등	180
	소계		1,306
유지 관리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운영	사업관리, 시스템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등	72
	지입제 피해 신고 시스템 운영	품질 및 사업관리 등	77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데이터 이관	데이터 백업 및 변환, 신규DB 이관 등	57
	소계		206
합계			1,51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경우, 과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의 제도 운영 사례와 유사하게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시스템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5억 3,300만원(연평균 17억 700만원)으로 추계

- 위원회 운영, 위탁사업비,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과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2년차인 2021년의 제도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시스템 인프라 신규 구축은 추계기간 중 첫해인 2025년에 완료하고 2026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3]하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표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위원회 운영	156	160	163	167	170	816	163
위탁사업비(용역)	1,016	1,038	1,060	1,083	1,105	5,303	1,061
신고센터 운영	91	93	95	97	99	477	95
시스템 구축 등	1,306	0	206	210	215	1,937	387
합계	2,570	1,292	1,525	1,557	1,590	8,533	1,707

주: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인 2021년 운영비 집행 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시스템 신규 구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HW 및 SW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Ⅳ. 부대의견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인 2021년 운영비 집행 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신규 구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